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위험공정 개선 등 6개 분야 중소사업장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24.12.31.(화)부터 지원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4.12.31.(화)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품목(분야)	지원대상	사업예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설비 일체	50인 미만 제조업 등	3,320억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515억원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242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350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유해물질 등 환기장치 필요 사업장 (50인 미만 우선지원)	158억원
	온열질환 예방설비 ※ 온열 관련 사업 3월 부터 추진 예정	50인 미만 사업장	200억원

*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붙임 참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 (안전동행 지원사업) anto.kosha.or.kr, ☎1644-4555
- (안전일터 조성지원) clean.kosha.or.kr, ☎1544-3088
- (건강일터 조성지원) kosha.or.kr[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 ☎1644-8835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 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계획부	책임자	부 장	이상희 (052-703-0751)
		담당자	차 장 과 장	이정민 (052-703-0752) 서진환 (052-703-0753)



20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소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수준격차 완화 등 산재예방효과 제고 ※25년 예산 : 3,320억원 (4,148개소)



지원자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①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보유(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거나 - ②고위험 6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small>*215**, 209**, 229**, 200**, 204**, 219**(신재보험기준 동일종)</small> - ③대형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일차전지 및 일차전지제조업** <small>**283**(표준산업분류)</small>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①원청(50인 이상)이 직접 또는 ②상생관련기금 연계하여 지원받거나 ③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위험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화재·폭발 대응을 위한 경보·대피 및 확산 방지시설 공정개선과 병행한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 조건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원청(기금)지원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사업절차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 24.12.31 ~ 25. 3.13

신청방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anto.kosha.or.kr 접속

▶ 신규 회원가입 ▶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표번호
1644-4555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해당 전문공사 시공 업종별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가 직접 설치 시 지원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순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등 체납하고 있는 자

2 지원조건 및 절차

-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 ※ 현장 당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 조정 가능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조건표 10% 상향 적용)
 - 고소작업대 규격 및 임대기간별 정액 지원(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조건표 10% 상향 적용)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50~65% 지원)
 -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 시스템동바리 설치 규격·면적별 표준단가를 적용 정액 지원(공단판단금액의 50~65% 지원)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수직보호망·시스템동바리는 보조금액의 47%만 지원, 고소작업대·사다리형 작업발판은 100% 지원, 추락방호망·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 품목별 보조금 세부 지원 조건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지원절차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임대·설치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사업주 공단

3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4. 12. 31. ~ 재원소진 시까지
- 장소 :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4 지원설비


-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고소작업대 : 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 시스템동바리 : 수직·수평·가새재, U헤드 잭, 받침철물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S마크)제품)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시스템동바리



수직보호망



플라잉넷



추락방호망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사업

2025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은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부정수금 등 참여제한 사업장, 산재보험료 등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 당해연도 용자금, 안전동행,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 결정 사업장

2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당해연도 1회에 한함)
- 지원절차



3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24. 12. 31.(화)~재원 소진시 까지(25년 재원 242.4억원)
-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문의 ☎ 1544-3088)

4 주요 지원설비

☞ 끼임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① 지게차·건설기계중대방설비 <전동방카레라, 감지센서>	② 화재 예방 설비 <흡기면, 모스호출기, 가스검지장치 등>	③ 고소작업대 <안전장갑 등 포함>	④ 원료수급 및 위험 자동화설비 <모프스, 컨테이너, 사출성형기>
			
⑤ 프레스 컨테이너 안전장치 <공전기, 압수조각기, 제기용 압착장치 등>	⑥ 프레스사출성형기 금형교정장치 <공압트 승압, 리프트에 따른 자동>	⑦ 미끄럼 방지 시설 <형조용계 롤러가면레이어 안전장치 등>	⑧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공과 안전복 고부하용지 등>
			
⑨ 추락방지 시설 <안전띠, 형제, 기구용계, 이동식 서대 등>	⑩ 리프트 승강기 안전장치 <형조용계, 고부하용지 등>	⑪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형조용계, 라이드트랙, 안전패드 등>	⑫ 시지형 고소작업대 비상용 방호장치 <안전띠, 안전복(모래받침 등)>
			
⑬ 컨설기계(굴삭기) 안전장치 <자동안전리프트, AVM 설정장치>	⑭ 석출기용유기계 교체 <자동안전인식고물 방지, 기동률 제어>	⑮ 화물자동차 충돌에 대한 방호설비 <후방카메라, 인체감지센서>	⑯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자동화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

-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Q 스마트 안전장비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 ②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3 지원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 ✓ **지원절차**



- ✓ **문의처** : 1544-3088 또는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원품목) 지정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구분	취급품목
안 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자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자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보 건 (7종)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 율	자율신청품목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공고문 참조

○ 품목 예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자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화학물질, 분진, 조리 부산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1644-8845(안전보건공단)

1.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포함)

※ 산재가입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2.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5,000 만원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500 만원)

대상 사업장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사업장	70% (자체부담 3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50% (자체부담 50%)

3. 지원대상 품목

☐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분진·고열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조리 부산물 발생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 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4. 신청방법

지역 별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신청서식 및 일선기관현황: 공고문참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 공지사항

5. 시행기간

'25. 1. 2. ~ 1. 31. 공모접수 (접수기간 이후 잔여재원 추가 공고)

6.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 대표전화 1644-8845